

대구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나3064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나306459 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2. 2. 8 선고 2020가단121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현, 김덕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안혜림

피고, 항소인 C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원

변론종결 2022. 10. 27.

판결선고 2023. 2. 2.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2. 2. 8. 선고 2020가단121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D 임야 6600㎡에 관하여 2015. 8.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경호, 판사 이경한, 판사 박소영